콘크리트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4장 제1절(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)의 규정에 의하여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안전보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 - (가) "피벗(Pivot)형 받침철물 삽입 동바리"라 함은 동바리에 피벗형 받침철물을 삽입, 상부 받이판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경사진 부분의 거푸집을 지지할 수 있는 동바리를 말한다.
- (나) "풋 스위치(Foot switch)"라 함은 페달(Pedal) 형태의 스위치로 발을 이용하여 조 작하는 스위치를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동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 공사

4.1 일반